

## 4단계 두뇌한국(BK)21

###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운영 세부지침

제정 2021. 04. 12., BK21 규칙 제1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하“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생활밀착형정보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원 교육 연구역량 강화
2. 문헌정보 및 기록관리학 융합 기반 학문후속세대 양성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연구결과 사회 환류체제 구축

**제3조 (교육연구단의 구성)** ① 교육연구단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사무직원으로 이루어진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단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단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

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교육연구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육연구단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단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참여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2. 참여교수는 동일한 대학교 및 대학원 학과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도 교육연구단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4. 참여교수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에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제8조 (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 등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40시간 이상 참여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할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한다. 단,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며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1학기 이상 교육연구단에 참여한 참여대학원생은 석사는 재학 중 1편 이상의 학술논문 게재 또는 ISBN이 기재된 100쪽 이상의 책자를 출판하거나 1회 이상의 학술발표를 하여야 하며, 박사는 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3. 그 외 의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참여대학원생들이 부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월70만원 이상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후연구생 : 월 130만원 이상
- ④ 신규 참여대학원생은 매학기 지도교수의 추천과 [표1]에 기재된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표 2] 신규 참여 대학원생 선발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신규	학부성적	학부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계속	대학원 성적	100점 만점으로 환산		직전학기
	논문실적	-국제저명학술지 (SSCI, A&HCI, SCIE) 편당 150점 -연구재단등재(후보)지 - 편당 100점		최근3년간 최근3년간
	학술발표	국내	15점	직전학기
		해외	30점	
교육연구단 참여도	-교육연구단주관 세미나, 콜로키움, 특강 등 - 회당 5점 - 대학원생 자체세미나, 스터디 모임 등 - 1회당 1점		직전학기	

\* 논문 및 학술대회 공동발표의 환산율은 당해연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업적평가 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 (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또는 연구교수라 하며,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계약교수 선발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산업체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 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선발은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⑥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대학 외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 2.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연구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박사후과정생은 교내외 6시간 이내(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 계약교수는 교외 6시간 이내(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로 제한한다.
  - 3.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4. 신진연구인력은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5. 신진연구인력은 학술대회에서 연 1회 이상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단에 해외학자를 초빙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2.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3.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4. 해외학자초빙 시 강사료 지급은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외 사업비 집행은 연구재단 및 산학협력단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5. 교육연구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6.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연구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의 선발기준과 활용은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강의를 포함)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도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참여교수 성과급은 예산 한도 내에서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년 1회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비율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의 배점은 각각 50%로 하며, 교육활동의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고, 연구활동의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3. BK21 사업 개시 첫해의 평가는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2차년도 말의 평가는 최근 2년간, 제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4. 등급에 따른 성과급의 금액은 성과급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등급 교수의 적정 인원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본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 [별표4]로 정한다.

③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④ 성과급 지원절차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학기별 교육연구단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급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성과급의 계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다.

3. 성과급이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해당 개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4. 논문 성과급은 발간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성과급의 지원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교육연구단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 지원 규모는 [표2]의 기준에 의거하며,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 2] 국제협력지원대상자 선발 및 지원기준과 지원규모

국제협력지원	1. 교육연구단 내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중 우수한 연구실적을 갖는
--------	--

대상자 선발 및 지원기준	<p>학생이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 <p>2.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생의 연구실적,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외연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p> <p>가. 논문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합산 점수</p> <p>나. 교육연구단의 세부 사업에 참여 기여도</p> <p>다.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p> <p>라. 그 외의 선발 대상자 기준은 국제협력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p> <p>3. 지원대상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으로 한다. 단, 참여교수는 지도학생과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p>
지원 범위	<p>1. 국제학술대회참가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p> <p>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BK21 사업의 기준을 따른다.</p> <p>나.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p> <p>2. 장기연수경비는 연구재단 및 산학협력단의 기준에 따른다.</p> <p>3.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해외 도서관 및 기록관 견학,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위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산은 교육연구단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p>
<p>· 국제협력 지원대상자는 연수기간 종료시점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이나 출장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p> <p>1.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p> <p>2. 항공료, 교통비 및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p> <p>3.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에는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p> <p>4. 그 외 지원 내용은 교내 및 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p>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단장이 선정하는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3. 그 밖의 교육연구단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④ 교육연구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



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 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평가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참여교수 교육활동 평가표(최대 5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교육활동	교육연구단 기여도	30
	지도 참여대학원생 수	10
	지도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실적	10

[별표 2] 참여교수 연구활동 평가표(최대 50점)

구분	평가항목	1건당 인정편수	인정범위	배점
학술논문	국제저명학술지	1.5편	SCIE, SSCI, A&HCI 등재학술지	1편=10점
	기타 국내외 학술지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기타 국제 학술지	

\*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의 계산방법은 당해연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업적평가 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3] 신진연구인력연구활동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연구활동	논문실적	국제저명학술지 (SCI, SSCI, A&HCI, SCIE) - 편당 150점
		연구재단등재후보지 - 편당 100점
교육연구단 운영활동	참석율	국외 발표 : 100점
		국내 발표 : 50점
		- 회의참석 90% 이상 : 50점
		- 회의참석 50-90% 미만 : 30점

\*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의 계산방법은 당해연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업적평가 지침을 준용한다.

\*성과급 금액은 매 학기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평가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4]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논문 실적	국제저명학술지 (SSCI, A&HCI, SCIE) - 한 편당 150점
	연구재단등재(후보)지 - 한 편당 100점
학술발표	국외 50점
	국내 20점
BK21사업 참여도 점수(최대 50점)	운영위원회 정성평가

\*논문 및 학술대회 공동발표의 환산율은 당해연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업적평가 지침을 준용한다.

\*성과급 금액은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평가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